

제322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1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220호)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박완주 · 최규성 · 박지원 · 오제세 · 주승용 · 김우남 · 이윤석 · 백재현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7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한명숙 · 장병완 · 김현 · 안민석 · 양승

조 · 진성준 · 박지원 · 이윤석 · 홍영표 · 이언주 · 임내현 의원 발의) 7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 · 유기준 · 윤영석 · 신성범 · 유승민 · 김
을동 · 정갑윤 · 박성호 · 이만우 · 김한표 의원 발의) 7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안홍준 · 한기호 · 서용교 · 주영순 · 이종훈 ·
류지영 · 김춘진 · 이명수 · 이에리사 · 황진하 · 김동완 · 한선교 · 김상훈 · 김재원 의원 발의) 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박성호 · 정갑윤 · 신성범 · 강길부 · 이
명수 · 김정록 · 박인숙 · 김성찬 · 원유철 · 이종훈 의원 발의) 7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배기운 · 김상희 · 진성준 · 오제세 · 조
정식 · 김현 · 이석현 · 민병두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 7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태흠 · 박완주 · 김을동 · 金永柱 · 김
춘진 · 문정림 · 황주홍 · 유성엽 · 강동원 의원 발의) 7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최규성 · 김현미 · 이미경 · 이석현 · 정
성호 · 인재근 · 송호창 · 박완주 · 우원식 의원 발의) 7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김기선 · 강석훈 · 이한성 · 정성호 · 박
인숙 · 이완영 · 이노근 · 황진하 · 박민식 · 윤진식 · 민홍철 · 이강후 · 최봉홍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86) 7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장하나 · 정성호 · 이미경 · 배기운 · 홍
종학 · 전병헌 · 문병호 · 김광진 · 김민기 · 신경민 · 유성엽 · 최민희 · 윤후덕 · 강동원 · 전정희 · 김
재윤 · 은수미 의원 발의) 7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전병헌 · 노웅래 · 조정식 · 배재정 · 양
승조 · 강기정 · 김영주 · 김동철 · 유인태 의원 발의) 7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정몽준 · 김재경 · 권성동 · 김용태 · 이
한구 · 이군현 · 신성범 · 전순옥 · 송광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8) 7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 · 이찬열 · 박혜자 · 민홍철 · 김현 · 신장
용 · 이미경 · 배기운 · 부좌현 · 박기춘 · 홍영표 · 강동원 의원 발의) 7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현미 · 윤후덕 · 신경민 · 박수현 · 유
은혜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도종환 · 한명숙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 7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
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7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고희선 · 김한표 · 신의진 · 윤명희 · 정희수 · 유
승우 · 이재영 · 김희국 · 이재오 · 전하진 의원 발의) 7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 · 김선동 · 오병윤 · 이석기 · 김미희 · 정
진후 · 김제남 · 김재연 · 이석현 · 金永柱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8) 7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 · 노회찬 · 김제남 · 김선동 · 김미희 · 김
재연 · 오병윤 · 이석기 · 박원석 · 정진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6) 7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조정식 · 한정애 · 배재정 · 임수경 · 박홍
근 · 배기운 · 신경민 · 윤관석 · 김한길 · 김광진 · 서영교 · 김제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0) 7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 · 김세연 · 황주홍 · 윤명희 · 김명연 · 신
동우 · 백재현 · 신성범 · 정우택 · 이노근 · 김을동 의원 발의) 7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 · 손인춘 · 송영근 · 김장실 · 김상민 · 김현숙 ·
강은희 · 황영철 · 최봉홍 · 류지영 · 윤명희 · 김정록 · 김진태 · 유일호 · 이상일 의원 발의) 8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세연 · 신성범 · 최봉홍 · 김정록 · 문대
성 · 남경필 · 이노근 · 김한표 · 조명철 · 이만우 의원 발의) 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이윤석 ·

김승남 · 윤호중 · 민홍철 · 이해찬 · 김광진 · 강동원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7)	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성곤 · 배기운 · 전병헌 · 문병호 · 민홍철 · 이미경 · 백재현 · 인재근 · 김윤덕 · 유기홍 · 조정식 · 강동원 · 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3)	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한명숙 · 이낙연 · 최동익 · 박주선 · 문병호 · 이상규 · 김춘진 · 배기운 · 이상민 의원 발의)	8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유성엽 · 윤명희 · 정갑윤 · 김춘진 · 신성범 · 최원식 · 이낙연 · 주승용 · 이명수 · 문정림 의원 발의)	8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 · 정몽준 · 이인제 · 김무성 · 남경필 · 정의화 · 이주영 · 송광호 · 김재경 · 고희선 · 강석호 · 김광립 · 이철우 · 유재중 · 김세연 · 홍일표 · 권성동 · 김용태 · 경대수 · 김동완 · 이이재 · 이우현 · 金永柱 · 현영희 의원 발의)	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문정림 · 손인춘 · 한정애 · 박인숙 · 민병주 · 류지영 · 은수미 · 유승희 · 김상희 · 김현숙 · 민현주 · 김태호 · 유일호 · 윤명희 · 이종훈 · 서상기 · 현영희 · 권은희 의원 발의)	8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김성곤 · 김용익 · 김현미 · 유은혜 · 이낙연 · 이상직 · 이해찬 · 정성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5)	8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윤관석 · 박수현 · 이석현 · 김민기 · 이윤석 · 김성곤 · 박지원 · 정세균 · 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	8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한정애 · 박혜자 · 최동익 · 최원식 · 서영교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이미경 · 김현 · 설훈 · 김용익 의원 발의)	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김재연 · 민홍철 · 유은혜 · 진성준 · 송호창 · 정호준 · 추미애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장하나 · 최동익 · 우윤근 · 윤후덕 · 전순옥 · 남인순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6430)	8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김재원 · 유승우 · 정수성 · 이강후 · 안홍준 · 류지영 · 송영근 · 김정록 · 문정림 의원 발의)	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김용익 · 최민희 · 김재윤 · 추미애 · 인재근 · 전순옥 · 노웅래 · 남인순 · 변재일 · 강창일 · 정호준 · 김현미 · 전해철 의원 발의)	8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상희 · 전순옥 · 유은혜 · 박원석 · 김현미 · 김제남 · 장하나 · 이학영 · 박혜자 의원 발의)	8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 · 이명수 · 이만우 · 김성찬 · 이현승 · 이한성 · 문대성 · 박성호 · 손인춘 · 송영근 의원 발의)	8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최원식 · 문병호 · 노영민 · 노웅래 · 김재윤 · 이원욱 · 최민희 · 양승조 · 안민석 · 박수현 · 김기준 · 도종환 · 이종걸 · 박완주 · 강창일 · 박병석 의원 발의)	8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송광호 · 홍문표 · 박덕흠 · 이장우 · 이운룡 · 이완구 · 정우택 · 강기윤 · 성완중 · 이명수 · 민병주 · 이인제 · 노철래 · 손인춘 · 김을동 · 이노근 · 윤진식 · 김현숙 · 김동완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8)	8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남인순 · 박범계 · 백근기 · 윤후덕 · 은수미 · 인재근 · 정청래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의원 발의)	8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유인태 · 김용태 · 이낙연 · 이만우 · 이주영 · 심재권 · 전순옥 · 박민수 · 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6)	9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주영 · 민현주 · 박인숙 · 송영근 · 정갑윤 · 서용교 · 민병주 · 이운룡 · 이이재 의원 발의)	9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장하나 · 강동원 · 김제남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남인순 · 박주선 · 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4)	9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장하나 · 강동원 · 김제남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남인순 · 박주선 · 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9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최규성 · 배기운 · 김미희 · 김승남 · 박민수 · 오병윤 · 김재연 · 이상규 · 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3) 9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강동원 · 강석호 · 김광진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완 · 김무성 · 김미희 · 김상민 · 김선동 · 김영주 · 김영환 · 남인순 · 노영민 · 도종환 · 문재인 · 민홍철 · 배기운 · 백재현 · 부좌현 · 서영교 · 신장용 · 원혜영 · 유은혜 · 윤관석 · 윤명희 · 윤호중 · 은수미 · 이낙연 · 이상민 · 이상직 · 이석현 · 이주영 · 이찬열 · 이학영 · 이현재 · 임내현 · 장하나 · 전순옥 · 전해철 · 정호준 · 최원식 · 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56) 9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최규성 · 배기운 · 박민수 · 오병윤 · 김재연 · 이상규 · 김미희 · 이석기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788) 9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강은희 · 박인숙 · 윤명희 · 이주영 · 권은희 · 신의진 · 박성호 · 신동우 · 김무성 · 김종훈 · 홍일표 · 박민식 · 민병주 · 신경림 · 문정림 · 황인자 의원 발의) 9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 · 김선동 · 김미희 · 김재연 · 이석기 · 오병윤 · 장하나 · 박주선 · 이만우 · 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941) 9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 · 장하나 · 김선동 · 김미희 · 김재연 · 이석현 · 이석기 · 오병윤 · 박주선 · 이만우 · 서영교 · 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9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이노근 · 김학용 · 이종진 · 최봉홍 · 서용교 · 이현재 · 김기선 · 전하진 · 김명연 · 박덕흠 · 김영우 · 송영근 · 박명재 · 경대수 의원 발의) 9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김정록 · 이에리사 · 신경림 · 이자스민 · 황인자 · 송영근 · 윤명희 · 김을동 · 문정림 의원 발의) 9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배재정 · 배기운 · 임수경 · 김성곤 · 서용교 · 이목희 · 장하나 · 이찬열 · 박민수 의원 발의) 9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 · 이노근 · 김학용 · 장윤석 · 성완중 · 홍문중 · 박창식 · 노철래 · 김을동 · 박대동 · 강기운 의원 발의) 9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장하나 · 강동원 · 김제남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남인순 · 박주선 · 김상희 · 이목희 · 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6) 9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김학용 · 이우현 · 장윤석 · 윤후덕 · 김기선 · 김상훈 · 이채익 · 정문헌 · 안종범 · 김진태 · 길정우 의원 발의) 9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최민희 · 윤호중 · 백재현 · 배기운 · 박범계 · 이원욱 · 한명숙 · 김현 · 전해철 · 원혜영 · 박홍근 · 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2) 9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우현 · 장윤석 · 이노근 · 박대동 · 박성호 · 성완중 · 전하진 · 이강후 · 이현재 · 박덕흠 · 안덕수 · 주영순 · 박윤옥 · 윤영석 · 최봉홍 · 김태원 · 박성호 · 김상훈 · 권은희 · 홍문중 의원 발의) 9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정호준 · 배기운 · 강동원 · 정진후 · 배재정 · 박홍근 · 이학영 · 서영교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0) 9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강은희 · 김정록 · 김한표 · 류지영 · 박명재 · 신동우 · 안덕수 · 李宰榮 · 이현재 · 주영순 · 홍문표 · 홍지만 · 황진하 의원 발의) 10
6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장하나 의원 외 56인의 소개로 제출) 10
6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10
6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홍의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6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문정림 · 윤명희 · 신경림 · 민병주 · 조

- 명철·최봉홍·이만우·주영순·강은희·송영근·김장실·김정록·이에리사 의원 발의) 10
6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문정림·윤명희·신경림·민병주·조명철·최봉홍·이만우·주영순·신의진·강은희·송영근·김장실·김정록 의원 발의) 10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10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에리사·이원욱·홍문표·이상직·신장용·전순옥·서기호·강동원·김재윤·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10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현영희·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서상기·김명연·송영근·김한표·이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8) 10
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만우·이자스민·안효대·이종훈·이이재·李宰榮·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이운룡·조명철·민병주·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8) 10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10
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배재정·김용익·신경민·배기운·김재윤·전순옥·최민희·유은혜·김기준·유기홍 의원 발의) 10
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최봉홍·김태원·박성호·권은희·송영근·홍문종 의원 발의) 10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주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4년 첫 임시국회를 맞아서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특위 활동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의 척결과 선거구 획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유지 여부, 교육감 선출방식 등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다음 과제로 남겨 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번 특위 활동기간에 마무리 지어야 하며 지난번 특위에서 보여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아지고 역지사지하는 배려가 계속된다면 슬기롭게 잘 해결될 것으로 생

각을 합니다.

임시국회 기간 중 각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우리 특위에 주어진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소위에 회부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72건의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정되는 대부분의 안건은 지난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던 안건이지만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새로 구성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상정 및 소위 회부 절차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미 다루었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인 의사일정 제 64항과 제65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들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언주·임내현 의원 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유기준·윤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홍준·한기호·서용교·주영순·이종훈·류지영·김춘진·이명수·이에리사·황진하·김동완·한선교·김상훈·김재원 의원 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박성호·정갑윤·신성범·강길부·이명수·김정록·박인숙·김성찬·원유철·이종훈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민병두·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태흠·박완주·김을동·金永柱·김춘진·문정림·황주홍·유성엽·강동원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송호창·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김기선·강석훈·이한성·정성호·박인숙·이완영·이노근·황진하·박민식·윤진식·민홍철·이강후·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6)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정성호·이미경·배기운·홍종학·전병현·문병호·김

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최민희·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은수미 의원 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전병현·노웅래·조정식·배재정·양승조·강기정·김영주·김동철·유인태 의원 발의)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정몽준·김재경·권성동·김용태·이한구·이군현·신성범·전순옥·송광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8)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이찬열·박혜자·민홍철·김현·신장용·이미경·배기운·부좌현·박기춘·홍영표·강동원 의원 발의)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현미·윤후덕·신경민·박수현·유은혜·진선미·우원식·이목희·도종환·한명숙·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김제남·박홍근·박원석·유성엽·심상정·서기호·노회찬·강동원·이목희·홍영표 의원 발의)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고희선·김한표·신의진·윤명희·정희수·유승우·이재영·김희국·이재오·전하진 의원 발의)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정진후·김제남·김재연·이석현·金永柱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8)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노회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6)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조정식·한정애·배재정·임수경·박홍근·배기운·신경민·윤관석·김한길·김광진·서영교·김제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0)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김세연·황주홍·윤명희·김명연·신동우·백재현·신성범·정우택·이노근·김을동 의원 발의)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 · 손인춘 · 송영근 · 김장실 · 김상민 · 김현숙 · 강은희 · 황영철 · 최봉홍 · 류지영 · 윤명희 · 김정록 · 김진태 · 유일호 · 이상일 의원 발의)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세연 · 신성범 · 최봉홍 · 김정록 · 문대성 · 남경필 · 이노근 · 김한표 · 조명철 · 이만우 의원 발의)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이윤석 · 김승남 · 윤호중 · 민홍철 · 이해찬 · 김광진 · 강동원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7)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성곤 · 배기운 · 전병현 · 문병호 · 민홍철 · 이미경 · 백재현 · 인재근 · 김윤덕 · 유기홍 · 조정식 · 강동원 · 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한명숙 · 이낙연 · 최동익 · 박주선 · 문병호 · 이상규 · 김춘진 · 배기운 · 이상민 의원 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유성엽 · 윤명희 · 정갑윤 · 김춘진 · 신성범 · 최원식 · 이낙연 · 주승용 · 이명수 · 문정림 의원 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 · 정몽준 · 이인제 · 김무성 · 남경필 · 정의화 · 이주영 · 송광호 · 김재경 · 고희선 · 강석호 · 김광립 · 이철우 · 유재중 · 김세연 · 홍일표 · 권성동 · 김용태 · 경대수 · 김동완 · 이이재 · 이우현 · 金永柱 · 현영희 의원 발의)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문정림 · 손인춘 · 한정애 · 박인숙 · 민병주 · 류지영 · 은수미 · 유승희 · 김상희 · 김현숙 · 민현주 · 김태호 · 유일호 · 윤명희 · 이종훈 · 서상기 · 현영희 · 권은희 의원 발의)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김성곤 · 김용익 · 김현미 · 유은혜 · 이낙연 · 이상직 · 이해찬 · 정성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5)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윤관석 · 박수현 · 이석현 · 김민기 · 이윤석 · 김성곤 · 박지원 · 정세균 · 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한정애 · 박혜자 · 최동익 · 최원식 · 서영교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이미경 · 김현 · 설훈 · 김용익 의원 발의)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김재연 · 민홍철 · 유은혜 · 진성준 · 송호창 · 정호준 · 추미애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장하나 · 최동익 · 우윤근 · 윤후덕 · 전순옥 · 남인순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6430)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김재원 · 유승우 · 정수성 · 이강후 · 안홍준 · 류지영 · 송영근 · 김정록 · 문정림 의원 발의)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김용익 · 최민희 · 김재윤 · 추미애 · 인재근 · 전순옥 · 노웅래 · 남인순 · 변재일 · 강창일 · 정호준 · 김현미 · 전해철 의원 발의)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상희 · 전순옥 · 유은혜 · 박원석 · 김현미 · 김제남 · 장하나 · 이학영 · 박혜자 의원 발의)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 · 이명수 · 이만우 · 김성찬 · 이현승 · 이한성 · 문대성 · 박성호 · 손인춘 · 송영근 의원 발의)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최원식 · 문병호 · 노영민 · 노웅래 · 김재윤 · 이원욱 · 최민희 · 양승조 · 안민석 · 박수현 · 김기준 · 도종환 · 이종걸 · 박완주 · 강창일 · 박병석 의원 발의)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송광호 · 홍문표 · 박덕흠 · 이장우 · 이운룡 · 이완구 · 정우택 · 강기윤 · 성완중 · 이명수 · 민병주 · 이인제 · 노철래 · 손인춘 · 김을동 · 이노근 · 윤진식 · 김현숙 · 김동완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8)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남인순 · 박범계 · 백균기 · 윤후덕 · 은수미 · 인재근 · 정청래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의원 발의)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유인태·김용태·이낙연·이만우·이주영·심재권·전순옥·박민수·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송영근·정갑윤·서용교·민병주·이운룡·이이재 의원 발의)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4)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미희·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3)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강동원·강석호·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완·김무성·김미희·김상민·김선동·김영주·김영환·남인순·노영민·도종환·문재인·민홍철·배기운·백재현·부좌현·서영교·신장용·원혜영·유은혜·윤관석·윤명희·윤호중·은수미·이낙연·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주영·이찬열·이학영·이현재·임내현·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호준·최원식·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56)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788)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은희·박인숙·윤명희·이주영·권은희·신의진·박성호·신동우·김무성·김종훈·홍일표·박민식·민병주·신경립·문정립·황인자 의원 발의)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기·오병윤·장하나·박주선·이만우·김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8941)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노근·김학용·이종진·최봉홍·서용교·이현재·김기선·전하진·김명연·박덕흠·김영우·송영근·박명재·경대수 의원 발의)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김정록·이에리사·신경림·이자스민·황인자·송영근·윤명희·김을동·문정립 의원 발의)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배재정·배기운·임수경·김성곤·서용교·이목희·장하나·이찬열·박민수 의원 발의)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노근·김학용·장윤석·성완중·홍문중·박창식·노철래·김을동·박대동·강기윤 의원 발의)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이목희·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6)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김학용·이우현·장윤석·윤후덕·김기선·김상훈·이채익·정문현·안종범·김진태·길정우 의원 발의)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최민희·윤호중·백재현·배기운·박범계·이원욱·한명숙·김현·전해철·원혜영·박홍근·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2)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박성호·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윤영석·최봉홍·김태원·박성호·김상훈·권은희·홍문중 의원 발의)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정진후·배재정·박홍근·이학영·서영교·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0)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은희·김정록·김한표·류지영·박명재·신동우·안덕수·李宰榮·이현재·주영순·홍문표·홍지만·황진하 의원 발의)
- 6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장하나 의원 외 56인의 소개로 제출)
- 6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 6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홍의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문정림·윤명희·신경림·민병주·조명철·최봉홍·이만우·주영순·강은희·송영근·김장실·김정록·이에리사 의원 발의)
- 6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문정림·윤명희·신경림·민병주·조명철·최봉홍·이만우·주영순·신의진·강은희·송영근·김장실·김정록 의원 발의)
-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 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에리사·이원욱·홍문표·이상직·신장용·전순옥·서기호·강동원·김재윤·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현영희·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서상기·김명연·송영근·김한표·이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8)
- 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만우·이자스민·안효대·이종훈·이이재·李宰榮·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이운룡·조명철·민병주·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8)
-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헌승·이한성·문대성·박

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 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배재정·김용익·신경민·배기운·김재윤·전순옥·최민희·유은혜·김기준·유기홍 의원 발의)
- 7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성완종·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최봉홍·김태원·박성효·권은희·송영근·홍문중 의원 발의)

(15시18분)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논의하지 않았던 안건인 의사일정 제64항과 제65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류지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과 제6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주호영** 예.

○**백재현 위원** 64항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공직선거법이 아니지요?

○**위원장 주호영** 그렇습니까?

64항 법안명이 뭐지요, 전문위원?

○**백재현 위원**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논의 자체를 얹기로 했는데……

○**위원장 주호영** 예?

○**백재현 위원** 지방자치법은 논의 자체를 얹기

로 했잖아요.

○**위원장 주호영** 뭐 하지 않기로요?

○**백재현 위원** 지방자치법 자체는 우리 정치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당초에……

○**김학용 위원** 상정해 놓는 건 관계없어요.

○**위원장 주호영** 선거 관련 조항만 아마……

○**백재현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자체는……

○**위원장 주호영** 그랬습니까?

○**백재현 위원** 예.

○**위원장 주호영** 지방자치법 자체를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김학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백재현 위원** 어떤 경우라도, 지방자치법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지방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이지……

○**위원장 주호영** 소관을 지방자치특위에서 하도록 할 것이지 논의할 것은 아니다?

○**백재현 위원** 예, 발전특위에서 할 것이지 정치개혁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일단 상정만 해 놓고 저희들……

○**김성주 위원** 상정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호영** 그렇습니까?

○**김성주 위원** 다루지 않는데 상정을 왜 할까요?

○**위원장 주호영** 상정조차 하지 말까요? 사실은 상정된 상태인데, 지금 따지면.

○**김학용 위원** 수석님, 저도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백재현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래서 저희가 양당 대표 협의사항을, 합의문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지방선거 관련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이 공직선거법……

○**백재현 위원** 아니야, 공직선거법만 다루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당초 우리가 정치특위에서 논의할 때 공직선거법에 관한 사항만 정치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위원장 주호영** 백재현 위원님, 어차피 발의된 법안이고 저희들이 심의 안 되면 다시 이 위원회가 끝나면 소관 상임위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 상정은 된 상태니까 보고만 듣고 소위원회에 회

부하는 절차, 그렇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주호영** 계속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러면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모두 류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까지 허용한 것을 2기로 축소하여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패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행정의 일관성, 사업 추진의 지속성 등이 저해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행정구로 전환하고 행정구·군의 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종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주민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행정구·군에 지방의회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참여권 등 지방자치 후퇴 문제, 자치구 폐지로 인한 특별시장·광역시장에 대한 견제 약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주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안전행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방송 출연, 교육부장관은 해당 상임위 출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위원이 대리 출석을 허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체 안건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다른 위원님이 다 손을 안 드셨네.

○**위원장 주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차례로 좀 받아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하고 연장이 아닌 종료되고 또다시 구성을 했어요. 1월 28일 날 특위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선거 제도개선에 대해서 교육감선거의 직선제를 유지하고 교육경력이 일몰되는 당시 현행법을 교육경력 3년으로 개정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의원선거구의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그것이 시도별로 늘어난 현황의 별표를 의결을 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시도에 위임돼서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확정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좀 소회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1월 28일 날 법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여야 간 합의돼 있는 본회의 일정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구정이 지나서 그 본회의가, 2월 5일 날에야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다음 주인 2월 11일 날 국무회의가 있어서 2월 11일에야 법이 공포가 됐지요.

그로 인해서 참말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교육경력 3년을 개정된 부분이 7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참 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도 너무도 낭패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기초의원선거구 확정 문제가 그로부터 시도에 전달돼서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이달 하순까지나 겨우 되고 3월 2일부터 기초선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정당공천에 대한 판단 문제 이전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것이 2월 21일 날, 그러니까 선거 9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늦게 법을 고치고 또 본회의 일정이 없었고 또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예비후보 희망자들에게 열흘 정도의 기간을 늦추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소회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 폐지라는 지난 대선에 있어서의 후보들 간의 또 후보들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말나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약을 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또 정당의 후보 또 그 공약을 같이 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또는 이행을 못 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좀 밝혀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된 이 정개특위가 국민들께 그리고 또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희망자들에게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국회 정개특위가 보통 선거를 앞두고 소집이 되고 또 출마 예상자들이나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괴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선거 시작 직전인 4년 전에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걸 토대로 후보자들이나 국민들이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

서는 국회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정개특위 운영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큰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남윤인순입니다.

저는 정개특위가 다시 재구성이 되면서 이번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개혁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관심사안 중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이 지난 정개특위에서도 논의가 일정하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갤럽조사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 중에서 한 70% 정도는 투표시간을 8시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했던 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로 개인적인 일, 출근 등이 1순위, 39% 정도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시간 연장이 굉장히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중에는 가장, 자기 유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갤럽조사로 확인이 됐고요.

작년 10월에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보장공동행동에서도 투표권 침해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택배 노동자라든가 건설 노동자, 간병 노동자, 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문제를 반영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10시까지 하는 안, 9시까지 하는 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회의록을 보니까 이틀 동안 사전에 선거할 수 있는데 또 당일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새누리당 측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전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당일 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건 또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한테 그래도 정치개혁 특위가 뭘 하나 일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투표시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확인된 만큼 8시까지라도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오랫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관련해서 여기 국회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일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바로 소수자인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개혁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 폐지 문제 자체 때문에 사실은 논의가 많이 안 된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 폐지 유무가 논란이 됐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여성 참여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여성 추가당선제라고 하는 걸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정당공천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어서 만든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결론을 내야 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해서……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이미 존재하는,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도 존재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유효투표 정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여성 후보자 중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 다 넣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득표자 1인을 추가로 당선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당공천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 이 제도는 어쨌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치개혁의 하나라고 하는 여야 간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는 우선, 정당공천 폐지 여부 문제는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또 따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계속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투표시간 연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껄껄조사에서 나온 부분이 선거권 연령 하향 부분입니다. 물론 껄껄조사에서는 18세로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문제도 여전히 소위원회에서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호영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이노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남인순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선거 투표시간 이거는 소위원회에서 그런대로 심도 있게 논의가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투표라는 것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3일씩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3일씩 줬으면 됐지 이걸 또다시 6시를 8시까지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의무, 일종의 선연적이지만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거지요.

또 사전투표도 4시까지 하던 것을 6시까지 했지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만일 자기가 투표를 하려고 가는데 사용자가 방해할 한다 그러면 최고 과태료 1000만 원입니까?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투표의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투표를 안 한다 하면 본인의 책임이지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무슨 근로자, 무슨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면 3일씩이나 그렇게 하는 직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소선거구제가 많이 논의됐는데 참 이걸 어떤 의미에서 선거의 기술상·편리상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이 문제도 좀 더 정밀하게,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만일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면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로 위임을 해서 그쪽 지역은 우리는 중선거구제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소선거구제로 하겠다 이렇게 말기면 지역 실정에 맞게 그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좀 진지하게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3층 구조로 돼 있지요. 이것을 한 층으로 줄이는 문제도 지방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할…… 또 앞으로 무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발전 무슨 특별위원회입니까? 그런 데서도 앞으로 이거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이것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복잡한 행정시스템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낭비 이런 것을 없애려면 좀 층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좀 더 연구를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제64항과 제6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들은 대체토론이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질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기왕에 마이크가 왔으니까 딱 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개특위가 연장될 때에 과연 어떤 성과를 더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불투명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국민들도 다 걱정하고 계시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이것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누리당·민주당 간에 책임 있는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기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들을 가지고 좀 성실하게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원내대표 연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정치개혁특위는 전통적으로 만장일치 합의제로 그동안에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을 철회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사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누리당에서는 새누리당대로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새정추는, 사실 정당공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법과 상관없이 당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과제라고 한다면 당의 방침으로 이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방법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비례대표 확대입니다. 새누리당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철회하면서 비례대표 30% 확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거론하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소선거구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근거가 있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선거구제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양당의 어떤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래서 개혁과 역행하는 방안이다…… 저는 그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30% 확대를 새누리당에서도 공언을 하셨는데 저희는 당론이 50%입니다마는 저는 30% 확대까지 이번 정개특위에서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그 의지를 좀 김학용 간사께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건에 대한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라는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 앞에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의 49쪽에 보면 2010년 2월 2일 교육의원 일몰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 2010년 2월 2일 교육위원을, 셋째 줄에 보면요 교육위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뽑자는 한나라당하고 직선제로 뽑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못 내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2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2월 4일까지도 이게 처리 안 돼 가지고서 또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이러다가 민주당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 민주당 안민석 간사가 전날 밤과 이날 오후에 회동을 갖고서 절충안으로 마련한 게 교육의원 일몰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이종걸 위원장이 ‘일단 일몰제를 시행한 뒤에 교육위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4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12쪽 왼쪽 아래에 쪽 나와 있으면서 13쪽 위에 당시 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도표가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인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지지를 했고, 그때 소선거구제의 선거구가 넓은 데 따른 선거의 비현실성 때문에, 표의 증가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지지를 했고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교원단체 입장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일몰제 쪽으로 타협안을 절충하게 된 것인데요. 그 교원단체가 13쪽 밑의 주에 보면 공청회에서 교총정책연구소장도 반대를 했고 전교조 부위원장도 비례대표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을 낸 세 의원들도 그렇고 당사자인 교육단체들, 교총이라든가 전교조 또 그리고 교육의원들…… 이제 6월 달이면 일몰제가 시행이 된단 말이지요. 이래서 교육자치가 이제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비례대표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자치가 완전히 말살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논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의원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소위에서 논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농성을 지금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8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서 이것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소위에 회부되면 논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정개특위에서 먼저 선거구 확정 문제도 좀 우리가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이런 선거구 확정 문제도 항상 우리 정개특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도 꼭 압박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선거구, 국민들도 혼동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19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불과한 달을 남겨 놓고 선거구 획정을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런 선거구 확정 문제만큼은 좀 정개특위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나 민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먼저 해결하지 못한 정당공천제 문제, 분명히 현재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왜 이 분야,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분명히 위헌 소지 있는 것을 알고 정부나 여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위헌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정말 국민이 바라는 공천이 무엇인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또 지구당 위원장들, 원내가 됐든 원외가 됐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상향식 공천 하면, 아마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가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거의, 수도권의 한 75% 이상 민주당이 지금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갖고요.

또 지방자치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지금 깨끗해졌는데 다시 혼탁한 선거를…… 과연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런 것은 아마 국민들도 이제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공천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별해서 깨끗한 후보를, 정의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새누리당이 되든 후보를 당의 모든 거에 맞게끔 공천하면, 저는 국민에게 상향식 공천을 주면 아마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다 생각을 갖고요. 민주당도 이제 정개특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간사님들이나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도 아마 그렇게 지금, 대다수 국민은 우리 기득권 내려놓으면 아마 큰 박수 칠 걸로 봅니다.

또 아까 말한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투표시간 더 연장 문제는 이미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또 시간도 사전투표 시간을 2시간씩 늘려서 이미 됐습니다. 시간 문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여성분들이 정당공천제를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의 중진의원님들도 분명히 공천제 폐지는 문제가 많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많이들 하셨고 여성분들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소위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민주당 위원님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지금 말을 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제가 정개특위에 참여했을 때는 온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혁신 공약인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거의 두 달 동안 관련된 논의도 제대로 소위에서 해 보지

도 못하고 시한에 쫓기는 촉박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핵심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을 통해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자기가 당선되면 그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자기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기초공천·정당공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었고 또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다 이거를 공약한 것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작년 보궐선거에서 실제로 무공천을 실천함으로써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에 호응해서 민주당도 작년 여름에 정당 사상 최초로 정당원 투표로 기초공천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공약했고 실천해 왔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서 대표적인 정치 공약인 기초공천 폐지 공약도 파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자꾸 위헌론을 제기하는데요. 지난 번 전 현재재판관한테 설명을 들었다시피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었지 정당공천을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입법 사항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위헌 소지가 있었다면 왜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을 했습니까? 그런 정도, 헌법도 검토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정당인가요?

저는 새누리당이 무슨 이유로 기초공천 폐지를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당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줄 세우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준다고 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할 정도라면 왜 기초공천 폐지 못 합니까? 기초공천 폐지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초공천 폐지는 반대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제도가 있습니다. 요새 선관위가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주장하고 있고 저도 매니페스토 서약을 하고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매일 매일 저는 그 선거, 제가 내세운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그걸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이것 위헌이니까 안 된다고 하든지 이거는 내가 소속했던 여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든지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합니까?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공약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거에 따라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대선 공약도 파기하면서 지방선거 공약을 어떻게 내세울 겁니까? 국민들이 ‘그것 당신들 지나면 또 파기할, 깰 텐데 그거 왜 우리한테 들고 나오냐?’ 이 얘기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제안합니다. 이 지리한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 시선이 따갑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려 하고 새누리당은 안 지키려 하는데 같이 욕먹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노근 위원 민주당은 지키세요.

○김성주 위원 민주당은 당론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정해지지 않았으면 빨리 당론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양당 지대 부 간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끌다가 또 한 번 정치권과 국회가 비난받는 일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하고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주호영** 먼저 드릴까요?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저도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현재에서 ‘정당표방제와 정당공천제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위헌을 알고 정부나 여당이 그것을 꼭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이 돼서 위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지금 5년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1년도 아직 못했습니다. 1년도 못했으면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얼마든지 이번 지방선거를……

왜 정당공천제를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민주당 후보나 새누리당 후보가 얘길 했겠습니까? 국민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고 이것도 해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2년 정도 남겨 놓고 공정한 게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영남·호남은 어차피 모든 선거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80%가 민주당인데 유리한 것을 민주당이 그렇게 까지 자기들 유리하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 만든다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공세 하는 건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4년 남았습니다. 4년 동안 공약 지킬 수 있는 것 지키면 되는 거고 이게 위헌의 소지가 정말 없다 이랬을 때는 정말 여야가,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이게 위헌이나 아니냐를 보고 위헌이 없다 이랬을 때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정개특위는 얼마든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 공약 몇 % 지켰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15% 지켰고요, 노무현 대통령 8% 지켰고요, 이명박 대통령 25% 지켰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분을 가지고 공약을 지켜라 뭐 이런 것은……

너무 정치적인 공약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정말 그런 상향식 공천제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겠다 그러는 거고, 정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민주당은 무공천하면 되는 거고 우리 새누리당은 좀 더 현재에다 모든 것 알아보고 정말 법이 다음에는 이게 위헌 소지가 없다 이랬을 때

는 우리 새누리당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것 하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상향식 공천, 모든 것 국민한테 돌려주는 안을 내도 되는 거고, 정의당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공약 이행 이런 것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스스로 민주당도 공약했는데 2013년도 지방선거 때 무공천하지 그때는 왜 공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정개특위 동안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민주당이 유리하고 저렇게 해도 유리하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거 해 주면 되는 건데, 꼭 그걸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것은 우리 정개특위에서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우리 김성주 위원께서 너무 그런 부분의 얘길 해서 저도 그런…… 정당공천제 지금 현재에서 위헌 소지가, ‘정당표방제와 정당공천제는 동일하다,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 것을 알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분은 조금 다음에 하시죠. 뒤에, 순서를 돌고 나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백재현 간사님 하시겠습니까?

○**백재현 위원** 먼저 하세요.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1월 28일 날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네 가지 사항을 통과해서 사실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못 받았습시다라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개혁안들이 포함돼서 이번 6·4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얘길 들으면서도 저희가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공청회, 똑같은 전문가 간담회를 들었어도 해석이 다 이렇게 다른 것은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저희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스스로의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약이라는 것이 100%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처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은 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준비한 상향식 공천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 의원 총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차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민주당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런 좋은 방안들을 같이 해 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최선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도 정개특위 간사로서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라도 이번에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행사에 대한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가 논의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우리 백재현 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여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출해 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지난 12월에 우리가 정개특위를 시작해서 지금 약 40여 일이 지나가고 50여 일이 됐네요.

그래서 일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월 28일 날 우리 전체회의를 통해서 합의

를 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했습시다 마는 가장 중요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이 시간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옳고 틀리다, 위헌이나 위헌 아니냐 이것도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 대선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지난 7월 달에 이미 당론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의해서, 67%의 우리 정당 당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우리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약속했고 그걸 당론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벌써 재작년 대통령선거 때 우리 문제인 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졌던,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 당을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지난 재작년 대통령 후보 때 박근혜 후보도 같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에 와서 같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 보면서도 이해가 달라요. 그 판결문에는 분명하게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법학회나 변호사협회에서는 그게 입법권의 재량 사항이라고 분명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공문으로 보내 온 적도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김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그게 위헌이라면 위헌을 알고 공약을 했다는 건가요? 참으로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않는 건 좋습니다.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왜 공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약속을 못 지키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전제가 없이 지금까지 아무 소리를 앓기 때문에 집권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당 쪽에서 이런 건지 저런 건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무 힘도 없는 정개특위에 맡겨서

‘거기서 논의한 대로 하겠다’ 그게 될 일입니까, 지금?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그래야 다른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득권 내려놓고 공천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그걸 뽑는 방법에서 정당의 관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구당 위원장의, 국회의원 의 거기에 대한 관여의 폭을 줄인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대통령께서 지난 18대 대선에서 2012년 11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못 지키다면 국민한테 분명한 그 입장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여당의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말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이외에도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소위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께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라도 만드는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도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가깝게 해서 논의할수록 그게 당사자인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도 앞으로 한 2년 좀 지나고 나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제도가 이미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확정위원회에서 제도로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앞으로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는 6·4 지방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노근 위원님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노근 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 하시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공약 지키세요.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공천 안 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시라고. 누가 못 지키게 했습니까? 자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는 공약을 지키겠다. 2명, 3명 나와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괜히 대통령 물고 늘어져 가지고 무슨 뭐가 어떠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 왜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접근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경제학에 의하면 시장 실패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행정학에 의하면 정부 실패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약 만들 때 안철수 그 당시 예비후보였습니까? 그분이, 사실 그분이 무슨 깊은 고민과 연구 끝에 폐지하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민주당도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득표 위주, 포퓰리즘 위주 그렇게 시작된 게 발단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공약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공약 실패는 김대중 대통령 때나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과거에도 다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 뭐 안 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국민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하지요. 그런데 그 원칙이, 그 출발대의 궁극적인 원칙이 기득권 내려놓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픈프라이머리 하자니까 민주당 발랑 나자빠지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 하자니까.

그러면 그것도 현행 제도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당헌·당규라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뭐 그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하시고, 지금 꼭 이렇게 정치공세 하면서 나오면…… 그냥 민주당도 빨리 하세요. ‘우리 안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용 자, 그러면……

○김성주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대리 김학용 이게 계속 똑같은 얘이지만 민주당 위원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김

성주 위원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자리에서 뭐 이런 공방을 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정치인의 발언은 다 정치적입니다. 더구나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한 것이냐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민주당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공천 폐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의 당에 득이 되는 여부까지도 고민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어느 당의 유불리 차원을 벗어나서 대선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끝에 전당원 투표에 부쳐서 당원 투표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 이행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자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 지켜라’, 저희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지도부와 의원들. 그런데 지키고 싶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기초선거에 무공천 하려고 하면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탈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 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민주당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겠지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민주주의 측면에서 아주 진전된 거다, 우리도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서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상대

가 주장한 것에 관계없이 이게 민주주의와 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스스로 하라고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만나서 이것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자, 정당공천 폐지, 오픈프라이머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를 한 번도 진지하게 안 했다고 지도부한테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전체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우리 간사님이 좀 제안하셔서 양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에 들어가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용** 김성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64항과 65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관 소위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는 법안 등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양당 간사들의 합의를 거쳐서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리고 안전행정부 제2차관님, 교육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성주	김학용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백재현	심상정	윤후덕
이노근	이우현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이창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차관	나승일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문상부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5. 30 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2. 6. 7 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언주·임내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3 여상규·유기준·윤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8 정희수·안홍준·한기호·서용교·주영순·이종훈·류지영·김춘진·이명수·이에리사·황진하·김동완·한선교·김상훈·김재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8 강기윤·박성호·정갑윤·신성범·강길부·이명수·김정록·박인숙·김성찬·원유철·이종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 원혜영·배기운·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민병두·김용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2 이명수·김태흠·박완주·김을동·金永柱·김춘진·문정림·황주홍·유성엽·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6 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송호창·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 발의)

(2012. 9. 3 박성효·김기선·강석훈·이한성·

정성호·박인숙·이완영·이노근·황진하·박민식·윤진식·민홍철·이강후·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9. 4 진선미·장하나·정성호·이미경·배기운·홍종학·전병헌·문병호·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최민희·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운·은수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2. 9. 5 장병완·전병헌·노웅래·조정식·배재정·양승조·강기정·김영주·김동철·유인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1 이재오·정몽준·김재경·권성동·김용태·이한구·이군현·신성범·전순옥·송광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4 이윤석·이찬열·박혜자·민홍철·김현·신장용·이미경·배기운·부좌현·박기춘·홍영표·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5 장하나·김현미·윤후덕·신경민·박수현·유은혜·진선미·우원식·이목희·도중환·한명숙·윤관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김제남·박홍근·박원석·유성엽·심상정·서기호·노회찬·강동원·이목희·홍영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6 고희선·김한표·신의진·윤명희·정희수·유승우·이재영·김희국·이재오·전하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9 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정진후·김제남·김재연·이석현·金永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0 이상규 · 노회찬 · 김제남 · 김선동 · 김미희 · 김재연 · 오병윤 · 이석기 · 박원석 · 정진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0 장하나 · 조정식 · 한정애 · 배재정 · 임수경 · 박홍근 · 배기운 · 신경민 · 윤관석 · 김한길 · 김광진 · 서영교 · 김제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6 유승우 · 김세연 · 황주홍 · 윤명희 · 김명연 · 신동우 · 백재현 · 신성범 · 정우택 · 이노근 · 김을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2 신의진 · 손인춘 · 송영근 · 김장실 · 김상민 · 김현숙 · 강은희 · 황영철 · 최봉홍 · 류지영 · 윤명희 · 김정록 · 김진태 · 유일호 · 이상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2. 5 정갑윤 · 김세연 · 신성범 · 최봉홍 · 김정록 · 문대성 · 남경필 · 이노근 · 김한표 · 조명철 · 이만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2. 27 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이윤석 · 김승남 · 윤호중 · 민홍철 · 이해찬 · 김광진 · 강동원 · 남인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0 원혜영 · 김성곤 · 배기운 · 전병헌 · 문병호 · 민홍철 · 이미경 · 백재현 · 인재근 · 김윤덕 · 유기홍 · 조정식 · 강동원 · 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6 김성곤 · 한명숙 · 이낙연 · 최동익 · 박주선 · 문병호 · 이상규 · 김춘진 · 배기운 · 이상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0 황주홍 · 유성엽 · 윤명희 · 정갑윤 · 김춘진 · 신성범 · 최원식 · 이낙연 · 주승용 ·

이명수 · 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2 김재원 · 정몽준 · 이인제 · 김무성 · 남경필 · 정의화 · 이주영 · 송광호 · 김재경 · 고희선 · 강석호 · 김광림 · 이철우 · 유재중 · 김세연 · 홍일표 · 권성동 · 김용태 · 경대수 · 김동완 · 이이재 · 이우현 · 金永柱 · 현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6 김을동 · 문정림 · 손인춘 · 한정애 · 박인숙 · 민병주 · 류지영 · 은수미 · 유승희 · 김상희 · 김현숙 · 민현주 · 김태호 · 유일호 · 윤명희 · 이종훈 · 서상기 · 현영희 · 권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8 최재성 · 김성곤 · 김용익 · 김현미 · 유은혜 · 이낙연 · 이상직 · 이해찬 · 정성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3. 7. 9 박기춘 · 윤관석 · 박수현 · 이석현 · 김민기 · 이윤석 · 김성곤 · 박지원 · 정세균 · 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8. 9 유승희 · 한정애 · 박혜자 · 최동익 · 최원식 · 서영교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이미경 · 김현 · 설훈 · 김용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0 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김재연 · 민홍철 · 유은혜 · 진성준 · 송호창 · 정호준 · 추미애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장하나 · 최동익 · 우윤근 · 윤후덕 · 전순옥 · 남인순 · 김태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 이한성 · 김재원 · 유승우 · 정수성 · 이강후 · 안홍준 · 류지영 · 송영근 · 김정록 · 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3 신경민·김용익·최민희·김재윤·추미애·인재근·전순옥·노웅래·남인순·변재일·강창일·정호준·김현미·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4 남인순·김상희·전순옥·유은혜·박원석·김현미·김제남·장하나·이학영·박혜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16 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7 이상민·최원식·문병호·노영민·노웅래·김재윤·이원욱·최민희·양승조·안민석·박수현·김기준·도종환·이종걸·박완주·강창일·박병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5 박성효·송광호·홍문표·박덕흠·이장우·이운룡·이완구·정우택·강기윤·성완중·이명수·민병주·이인제·노철래·손인춘·김을동·이노근·윤진식·김현숙·김동완·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홍익표·남인순·박범계·백근기·윤후덕·은수미·인재근·정청래·진선미·진성준·최동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1 이재오·유인태·김용태·이낙연·이만우·이주영·심재권·전순옥·박민수·신성범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18 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송영근·정갑윤·서용교·민병주·이운룡·이이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0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

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3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4 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미희·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이석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윤후덕·강동원·강석호·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완·김무성·김미희·김상민·김선동·김영주·김영환·남인순·노영민·도종환·문재인·민홍철·배기운·백재현·부좌현·서영교·신장용·원혜영·유은혜·윤관석·윤명희·윤호중·은수미·이낙연·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주영·이찬열·이학영·이현재·임내현·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호준·최원식·추미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김선동·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광진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30 김현숙·강은희·박인숙·윤명희·이주영·권은희·신의진·박성효·신동우·김무성·김종훈·홍일표·박민식·민병주·신경림·문정림·황인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31 이상규·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기·오병윤·장하나·박주선·이만우·김재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 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김태원·이노근·김학용·이종진·최봉홍·서용교·이현재·김기선·전하진·김명연·박덕흠·김영우·송영근·박명재·경대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1. 7 류지영·김정록·이에리사·신경림·이자스민·황인자·송영근·윤명희·김을동·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7 박남춘·배재정·배기운·임수경·김성곤·서용교·이목희·장하나·이찬열·박민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0 이우현·이노근·김학용·장윤석·성완중·홍문중·박창식·노철래·김을동·박대동·강기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3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이목희·홍종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7 이노근·김학용·이우현·장윤석·윤후덕·김기선·김상훈·이채익·정문헌·안종범·김진태·길정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1 최재성·최민희·윤호중·백재현·배기운·박범계·이원욱·한명숙·김현·전해철·원혜영·박홍근·유은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박성호·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윤영석·최봉홍·김태원·박성호·김상훈·권은희·홍문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

정진후·배재정·박홍근·이학영·서영교·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9 윤상현·강은희·김정록·김한표·류지영·박명재·신동우·안덕수·李宰榮·이현재·주영순·홍문표·홍지만·황진하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류지영·문정림·윤명희·신경림·민병주·조명철·최봉홍·이만우·주영순·강은희·송영근·김장실·김정록·이에리사 의원 발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류지영·문정림·윤명희·신경림·민병주·조명철·최봉홍·이만우·주영순·신의진·강은희·송영근·김장실·김정록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3 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3. 3. 20 유성엽·이에리사·이원욱·홍문표·이상직·신장용·전순옥·서기호·강동원·김재윤·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7. 4 박인숙·현영희·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서상기·김명연·송영근·김한표·이군현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9. 30 박인숙·이만우·이자스민·안효대·이종훈·이이재·李宰榮·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이운룡·조명철·민병주·정세균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16 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헌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

송영근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8 도종환·배재정·김용익·신경민·배기운·김재윤·전순옥·최민희·유은혜·김기준·유기홍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 23 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최봉홍·김태원·박성호·권은희·송영근·홍문종 의원 발의)

이상 68건 2014년 2월 4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1. 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오미예 외 9만 5745인으로부터 장하나 의원 외 56인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34 대웅빌딩 203호 청년유니온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한지혜 외 5만 1077인으로부터 진선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1 부산 북구 금곡동 95-11, 101호 정진우 외 8인으로부터 홍의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욱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2014년 2월 13일 회부됨